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홍국생명보험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3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: 1명 과태료(40만원~5,000만원) : 7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)

보험설계사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)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홍국생명보험(주)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7명은 2021.3.26. ~ 2022.12.31. 기간 중 ‘㉔통합보험’ 등 72건의 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7.5백만원)의 모집과 관련하여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